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31
----------	-------

발의연월일 : 2025. 8. 25.

발 의 자 : 이인선 · 정동만 · 김기현
안철수 · 조지연 · 조은희
이달희 · 추경호 · 박충권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스톱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범경찰관은 스톱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톱킹행위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심리·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톱킹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스톱킹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재차 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등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해자등이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준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8조제4항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반복적”을 “반복적(스토킹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복스토킹범죄”란 스톱킹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다목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범죄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보복스토킹범죄”로 한다.

제27조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2호의2”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호의3다목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범죄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보복스토킹범죄”로 한다.

제69조제1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2호의2”로 한다.

③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다목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범죄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보복스토킹범죄”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2호의2에 따른 스톱킹범죄·보복스토킹범죄”로 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4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의8제2항제1호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범죄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보복스토킹범죄”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의3다목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범죄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보복스토킹범죄”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2호의2”로 한다.

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의3마목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u>반복적으로</u>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반복적(스토킹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u> ----- -----. 2의2. “보복스토킹범죄”란 스톱킹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u><신 설></u> 3. · 4. (생 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② (생 략) <u><신 설></u>	3.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④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